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2. 16 선고 2020가단2163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0. 12. 15.

판 결 선 고 2021.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7. 4.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위 2/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7. 8. 7. 접수 제422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청구취지 기재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청구취지 기재 지분이 D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고 D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해 D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엄성환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가. 원고는 부실채권 매입 및 추심 관리하는 회사로서 소외 D ()에 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E 이 가지는 채권을 최종 양수한 채권자입니다.

나. 피고는 소외 D 의 가족이며, 이 사건 별지목록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사해행위취소 목적의 당사자입니다.

2. 채권의 양도 양수 및 채무의 확정

1차양도인 주식회사 E ⇒ 1차양수인 겸 2차양도인 F 주식회사 ⇒ 2차양수인 A 유한회사

위와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채권이 양도되고 그 무렵 소외 D 에게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외 D 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9160호 양수금 [금 48,108,189원 및 그 중 금 16,988,511원에 대하여 2012.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에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사해행위

가. 소외 G 의 사망과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 사건 양수금의 채무자인 소외 D 의 부친인 소외 G 이 사망하자 소외 D 는 상속인으로서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2017.04.02.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7.08.07.접수 제42287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나. 사해행위로서의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07. 26 선고 2007다29119판결), 소외 D는 G의 상속인들과 2017.04.02.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의 유일한 잠재적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가족인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그러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결과로써 소외 D의 책임 재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소외 D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피보전채권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인 채권발생 이후 소외 D는 2017.04.02.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의 유일한 잠재적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가족인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D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당연히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겠습니까.

라. 소외 D의 무자력

소외 D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고, 다른 재산이 없는 바, 소외 D의 채권에 대한 양수금 채무만을 감안하더라도 소외 D가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즉, 공동담보 부족) 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더욱 악화됨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까.

마. 채무자(소외 D) 및 수익자의 악의

1) 소외 D는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무자력이 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채무자인 소외 D의 사해의 의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더욱이, 위 97다54420 판결 등 대법원판례는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피고는 소외 D의 가족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악의(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소외 D가 무자력이 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9. 11. 12선고 99다29916판결) 임이 명백하고,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 더욱이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도 마찬가지임)는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 05. 09선고 96다 2606판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11. 12선고 99다29916판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9. 03. 26선고 2007다63102판결), 소외 D는 자기 자신의 그러한 재산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D가 악의임은 달라지지 않으며, 피고가 소외 D의 가족인 점을 감안하면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악의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4) 한편, 대법원 2006. 07. 04선고 2004다61280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정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의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

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원물반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D와 피고 사이의 2017.04.02.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소외 D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의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7.08.07.접수 제422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인 상속재산 협의분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D의 상속지분(2/9)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별 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블록조

33.1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대지권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남구 대 185.7㎡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857분의 309

(· 이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통기소 / 현 소유자)